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협력사 피해 보상 규정

제정 2016. 12. 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이라 함)이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하 통칭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라 함)이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협력사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한 협력사 피해보상의 절차와 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사내 임원 중 1명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 ② 본 협의회의 위원은 대외/홍보담당, 영업전략담당, 대외협력팀장, 컴플라이언스팀장, 법무팀장, 경영진단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추가 또는 배제 할 수 있다.

제3조 (협의회의 피해보상대상)

- ① 협의회의 피해보상대상은 피해당사자가 GS SHOP의 불공정거래 신고채널(레드휘슬 헬프라인, 윤리경영 핫라인, CEO에게 말한다 등)을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보상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 정한 금지행위의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 ② 구체적인 피해보상 여부와 규모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외 시행령, 고시, 지침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4조 (사건 조사)

협의회는 접수된 피해 사건이 피해보상대상으로 인정된 경우에 협의회의 전체 회의 소집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GS SHOP 임직원 및 해당 협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사실 관계 및 협력사의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전체 회의) 전체회의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피해보상신청사건에 대한 보상안의 협의
2. 소관 피해보상신청사건에 대한 보상안의 의결
3. 피해보상신청사건이 협의회의 피해보상대상이 아닌 경우의 각하 결정
4. 협의회의 운영내규의 제·개정

제6조 (협의회의 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상안 제시)

- ① 협의회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보상안은 그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안을 통지받은 협력사가 이를 수락하면 지체 없이 협력사와 구체적인 보상계획 등을 협의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안을 통지받은 협력사가 이를 거부하면 협의회는 재회의를 개최하여 보상안을 재협의 및 의결한다.

제8조 (보상안 거부)

협력사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최종 보상안을 거부하면 해당 피해보상절차는 종료된다.

제9조 (윤리위원회 보고)

소관 피해 보상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GS SHOP의 임직원이 제반 법령, 사내 규정 또는 윤리규범 위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01. 01부터 시행한다.